

“ 운동을 더 **안전**하게 운동의 **기쁨**을 더 크게 ”

## 수중강사배상책임공제(보험) 신규 서비스 안내

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라 수중형연안체험활동운영자(안전관리요원,강사)는 배상책임공제(보험)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 이에 스포츠안전재단에서는 수중 안전관리요원 및 강사들을 위하여 기존의 공제서비스 내용을 개선한 저렴한 비용의 공제서비스를 제공 하오니 본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안전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.

대 상	운영자 (안전관리요원,강사)
공제서비스기간	1년
보상위험	안전관리요원으로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의 교육, 강습, 통제 및 체험 활동에 관련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률상손해 배상금</li> <li>- 방어비용(소송, 변호사, 중재비용 등)</li> <li>- 손해경감비용(응급처치비용)</li> <li>- 기타비용(소송공탁보증 보험료 등)</li> </ul>
보상한도	청구당/증권당 150,000,000
자기부담금	300,000원
시행일	2019년 2월 1일 (현재 가입접수 중)
공제회비(보험료)	225,000원
주요면책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짝 잠수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</li> <li>2) 레저수중활동이 아닌 경우</li> <li>3) 수심 40m 초과한 잠수인 경우</li> <li>4) 음주 후 10시간이내의 잠수</li> <li>5) 교육중인 수강자가 강사의 지시 없이 잠수한 경우</li> <li>6) 불법잠수</li> <li>7) 재압 치료 후 72시간이내의 항공기탑승 또는 6주이내 잠수한 경우</li> <li>8) 벌금, 행정상의벌과금, 과태료</li> <li>9) 인격침해, 기타광고로 인한 명예훼손</li> </ol>

※ 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손해를 70% 초과 시 공제회비(보험료) 재 산정

계좌번호 : 100-029-286630 (신한은행 예금주스포츠안전재단)

담당 : 한덕희 02-422-5951

\ TEL : 1899-0547

(2019. 2/1일 이전까지 수기접수하며 이후 재단홈페이지 통해 가입 가능)